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97호 2023. 2. 1.(수)

거창천혜거창

선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760호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 2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65호 거창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5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17호 도로명주소 고시 ····· 9
거창군 고시 제2023-18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 10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146호 2023년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기간제근로자 채용 4차 공고 ··· 13
거창군 공고 제2023-158호 2023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모집 공고 ····· 24
거창군 공고 제2023-159호 2023년 뭐든知 가능한 원데이클래스 강사 모집 공고 ····· 32
거창군 공고 제2023-166호「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37
거창군 공고 제2023-167호「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45
거창군 공고 제2023-174호「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60
거창군 공고 제2023-184호「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69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2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60호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1

발의일자	2023. 1. 10.
발 의 자	김홍섭, 이홍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의원

1. 제안 이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무위원회 소관사무를 변경함(안 제3조제2항제2호)

1) 현행: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2) 변경: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무를 변경함(안 제3조제2항제3호)

1) 현행: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2) 변경: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7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2. 30.~2023. 1.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으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23년 2월 1일

거창군 훈령 제465호

거창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21시”를 “21시(다만, 토요일·공휴일의 경우 수영장 17시)”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장: 5세 이상
2. 센터: 6세 이하 어린이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보호자와 동반해야 함

제10조제1호 중 “락커”를 “사물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운영시간) ① (생 략) ② 사업장 별 입장 마감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수영장·탁구장: 21시 2. 볼링장: 23시 ③ (생 략)	제6조(운영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장 별 입장 마감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수영장·탁구장: 21시(다만, 토요일·공휴일의 경우 수영장 17시) 2. 볼링장: 23시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이용 기준) ① 5세 미만의 유아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6세 이상 7세 미만의 어린이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보호자 동반 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② 수영장·탁구장의 이용 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④ 국민체육센터 사업장별 이용자들은 샤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이용 기준) ① 시설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장: 5세 이상 2. 센터: 6세 이하 어린이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보호자와 동반해야 함 ② 수영장·탁구장의 이용 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④ 센터 사업장별 이용자들은 샤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변상) 물건을 분실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한다. 1. 락커 열쇠 분실: 열쇠 제작비 5,000원 2. 회원카드 분실: 카드 제작비 500원	제10조(변상) 물건을 분실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한다. 1. 사물함 열쇠 분실: 열쇠 제작비 5,000원 2. 회원카드 분실: 카드 제작비 1,000원

[별표 4]

근무자 보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자	보수 지급기준	수당의 종류
체육지도요원	수영강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거창군 방침	강습수당, 안전관리수당, 팀장수당
	탁구강사		강습수당, 팀장수당
	볼링강사		강습수당, 팀장수당, 프로샵운영수당
안전관리요원	수상구조사		안전관리수당
기술인부	난방시설 근 무 자		열관리수당
단순노무원	청소근무자		보전수당
행정보조원	안 내 원		보전수당
<신설> 기 계 원	볼링장기계원		보전수당

※ 팀장수당은 팀장에 한정함

거창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23-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체육시설사업소장

1. 제안이유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및 시설 이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회원카드 분실 변상 기준금액 및 근무자의 보수 기준의 일부를 개정하여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 별 입장 마감시간 예외조항 신설(안 제6조)

1) 현행) 수영장·탁구장: 21시

변경) 수영장·탁구장: 21시(다만, 토요일·공휴일의 경우 수영장 17시

나. 센터 시설이용 기준 변경(안 제7조)

1) 수영장: 5세 이상

2) 센터: 6세 이하 어린이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보호자 동반

다. 회원카드 분실의 경우 변상 기준금액 변경(안 제10조)

1) 회원카드 분실: 카드 제작비 500원 ⇒ 1,000원

라. 근무자의 자격 및 보수 변경(안 별표 4)

1) 기계원에 대한 보전수당 지급 규정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거창군 고시 제2023 - 1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1.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철마길 635-11 등 4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45-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3-18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일

거 창 군 수

1. **고시일자** : 2023. 2. 1.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번호	행정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앙선	건물번호	사물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신원면	변경 전	철마길	신원면 중유리 1162-1 (철마길 635)		도면참조	1	없음	종속구간 생성	직권
		변경 후	철마길	신원면 중유리 1162-1 (철마길 635-1)	신원면 중유리 산261 (철마길 635-48)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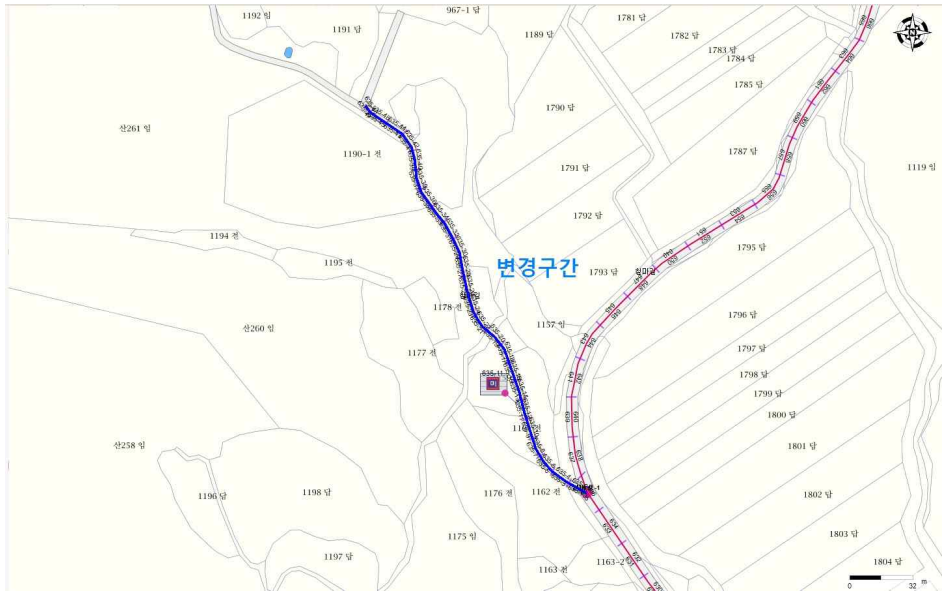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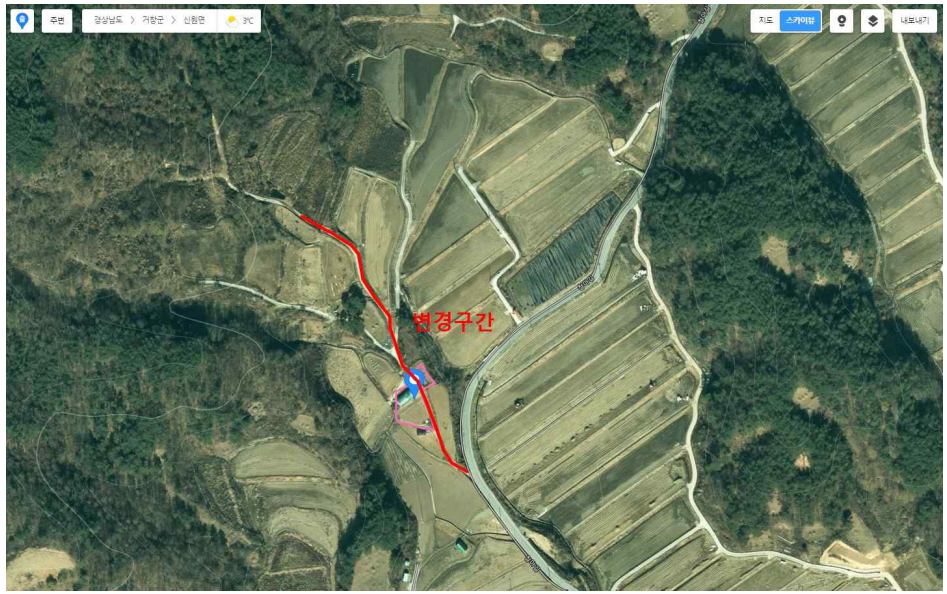

일련번호	행정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앙선	건물번호	사물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남상면	변경 전	상월평길	남상면 월평리 1564-66 (상월평길 62-1)	남상면 월평리 1488 (상월평길 62-38)	도면참조	9	없음	종속구간 연장	직권
		변경 후	상월평길	남상면 월평리 1564-66 (상월평길 62-1)	남상면 월평리 1495-4 (상월평길 62-58)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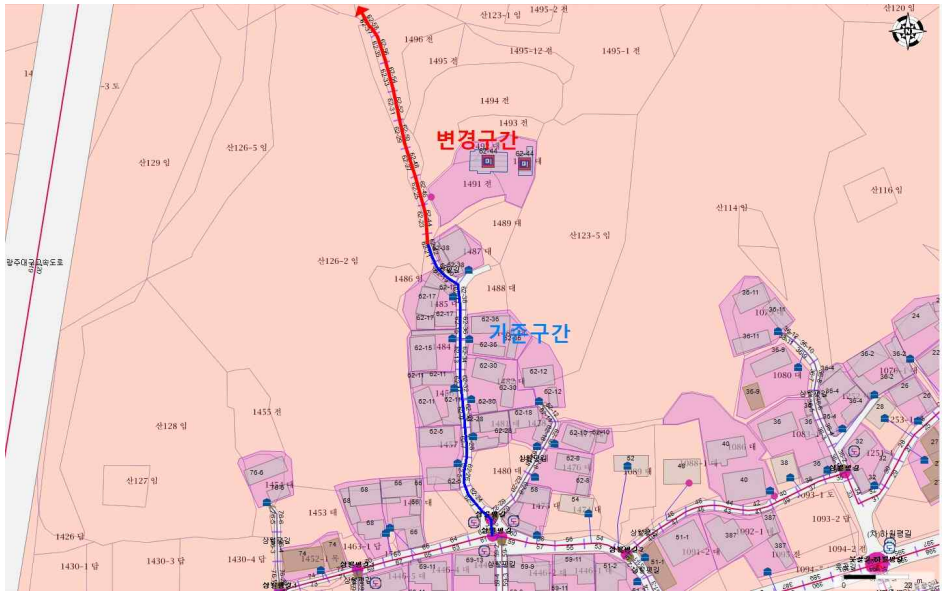

위성사진

거창군 공고 제 2023 - 146 호

2023년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기간제근로자 채용 4차 공고

거창군 산림과에서 항노화힐링랜드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재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거 창 군 수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 근무내용	근무장소
합계	8명		
항노화 힐링랜드 주차 및 교통 등 안전관리	5명	· 차량 통제 및 주차, 안전관리	항노화힐링랜드 일원
항노화 힐링랜드 매표 및 검표 관리	2명	· 매표 및 검표, 주차료 징수	
치유센터 관리·운영	1명	· 산림치유센터 청소 등 유지관리 ·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객 안전관리	

2. 근거 :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3.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간 : 2023. 2. 11. ~ 2023. 6. 30.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 보수수준 : 76,960원/일(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 출·퇴근 및 작업 장소 이동에 따른 수당(부대경비) 미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힐링랜드 운영 특성상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며, 별도 휴무일을 지정하고 평일 대체휴무 하며, 주 5일 근무원칙으로 한다. 단, 방문객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기타사항 : 4대 보험가입, 유급휴일·야간·초과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6) 근무부서 : 산림과 힐링랜드운영담당

7) 근로지역 : 거창항노화힐링랜드 및 임시주차장 일원

3. 응시자격

○ 거창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거창항노화힐링랜드는 자연휴양림 시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연1회 점검 예정임.

○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 (2023. 1. 1일 기준)으로 남자일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타사항

- 근무지 특성상,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 신청자격 제한 : [붙임1 참조]

4. 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공고기간 : 2023. 1. 26.(목) ~ 2. 3.(금) / 9일간

○ 접수기간 : 2023. 1. 31.(화) ~ 2. 3.(금) / 4일간

※ 2023. 2. 3.(금) 18:00까지 접수

○ 접 수 처 : 거창항노화힐링랜드 관리사무실(가조면 의상봉길 834)

○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본인 직접 제출(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고시·공고」 란 채용 공고문에 첨부

○ 서류심사 : 2023. 2. 6.(월)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 면접시험 : 2023. 2. 8.(수) / 면접 장소 및 시간 개별 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2. 10.(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사업개시 : 2023. 2. 13.(월) 예정

※ 위 일정은 거창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2. 참조]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1매 부착

○ 이력서[붙임3. 참조] 및 자기소개서[붙임4. 참조]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1매 부착
- 학력, 경력, 자격, 상훈 등 구체적 사실 기재

○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 주소변동이력 포함, 남자일 경우 병역 포함)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5.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개별통보 예정)

※ 신체검사서는 서류심사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약을 위해 대상자 최종 선정 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상이 있을시 선발 배제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본 채용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고 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 이내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휴대폰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 철회의사 확인 없이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기타 근무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과(☎940-7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청자격 제한]

※ 신청자격 제한(공통사항)

- ○ 근무특성상 야외에서 많은 인원의 방문객을 응대하는 등 피로도가 높고 감정 소모가 되는 근무임을 고려하여 응대가 불가능한 정도의 장애(신체·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 다만, 2023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23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건강이상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포기 또는 배제 받은 자
-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최근3년 기준, 1년간 미참여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노력이 확인되어야 신청가능.)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 실업급여 수급자

  ※ 반복참여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능력, 질병정도, 가족사항(돌봄대상 가족)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 ○ 실업급여 수급자(180일간 사업참여 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시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 ○ 타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으로 참여한 자

[붙임2.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접수번호		응시분야	□ 주차 □ 시설 □ 매표 □ 치유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HP : 수신동의 여부 동의( )미동의( )		

학력	부터	까지	학 교 명	전공학과	학위명

세대주 여부	해당	해당없음	세대원수	자격 면허	취득일자	종 별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비고

주요 경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 귀 군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

응시표	성명	한글		※응시번호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cm×4cm)
		한자		응시분야	행노화힐링랜드 기간제근로자 □ 주차 □ 시설 □ 매표 □ 경비 □ 치유	
	생년월일					
	2023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① 응시원서 :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자필**로 작성 제출

② 응시분야 : 채용분야 및 세부근무내용 참고하여 선택

③ 주　　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④ 학　　력 : 대학교 이하 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

⑤ 성　　명 : 정자로 기재

⑥ 생년월일 : 정자로 기재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3. 이력서]

이 력 서

사 진	성명	한 글		생 년 월 일	. . . (만 세)
		한 자			
주 소			연락처	자택) H·P)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위)
학	~		
	~		
력	~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경	~			
	~			
	~			
	~			
	~			
력	~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자	. . .		
격	. . .		
사	. . .		
항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붙임4.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항노화힐링랜드 기간제근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2023.　　.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채용직무분야 발전방안 및 근무자세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붙임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결격사유
 -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 유무 조회 별도 동의서 징구예정[붙임6 참조]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주소 :
 - 등록기준지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제공)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6.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 유무 조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자연휴양림 취업자 또는 노무 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3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거창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거창군 공고 제2023-158호

2023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모집 공고

거창군의 「2023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사를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

거 창 군 수

1. 모집내용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모집인원	비 고
찾아가는 문해교실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운영	10명	
학력 인정 문해 교실	초등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3명	
	중학	중학학력인정 성인문해육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타과목)	6명 (과목별 1명)	

※중복지원 가능

2. 근로조건

구 분	찾아가는 문해교실	학력인정 문해교실
활동기간	2023. 3월 ~ 12월	2023. 3월 ~ 12월
강 사 료	시간당 28,000원	시간당 32,000원
운영시수	주 2회/1일 2시간 (160시간 내외)	학력인정 교육편성과정에 따름 (240~480시간)
기타사항	평생학습 관련 행사 및 문해강사 보수교육 참여(월 1회) *70% 이하 참여시 내년도 선발에 불이익 있음 신규강사의 경우 자원봉사 50시간 후 강사료 지급	

3.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거주*하면서 다음사항 충족 *신청자 접수일기준

과정명		지 원 자 격
찾아가는 문해교실		***아래 두 자격 중 한가지 충족 시 지원 가능*** 1) 사)한국문해교육협회 문해교육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문해교육 초·중학 과정 교원연수 이수자
학력 인정 문해 교실	초등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초등과정 교원연수**를 이수한 자
	중학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중학과정 교원연수**를 이수한 자

4.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 30.(월) ~ 2. 9.(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거창군 청소년수련관 2층 사무실)

❍ 제출서류

- [서식1] 강사지원
- [서식2] 자기소개서
- [서식3] 수업계획서 : 중복 지원자의 경우 신청 분야별 각각 작성
- 자격증 사본 : 거창군에서 실시한 양성과정 수료생은 생략 가능
- 문해교육 관련 경력증명서 : 거창군 활동 강사일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 1부

5. 선발방법 및 일정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 1차 심사 : 2023. 2. 10.(금) ~ 2. 13.(월)

- 제출 서류 진위 여부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

❍ 2차 면접 : 2023. 2. 20.(월) 10:00 추후공지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심사내용 : 근무자세, 직무 분야 전문 지식 등 점검, 수업시연

❍ 합격자 발표 : 2023. 2. 22.(수) 10:00이후(개별연락 및 홈페이지공지)

*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계약을 포기할 경우 포기원을 작성하여 합격이 취소되며,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강사 위촉식 : 2023. 2. 23.(목) 예정

6.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 ❍ 지원자의 증명서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할 수 있음
- ❍ 접수자가 미달하면 재공고 실시함
- ❍ 강사 품위유지 및 복무가 불성실하거나 강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강사 해촉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인구교육과(☎055-940-8825)로 문의

【서식1】

강 사 지 원 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td><td>접수일자</td><td colspan="3"></td></tr>
<tr><td>지원분야</td><td colspan="5">찾아가는 문해교실 강사 □
초등학력인정 강사 □
중학학력인정 강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선택교과</td></tr>
<tr><td>성 명</td><td></td><td>성 별</td><td></td><td>생년월일</td><td>(만 세)</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2">휴대폰 :</td><td colspan="3">자 택 :</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이 메 일</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최종학력</td><td>학 교 명</td><td>학 과</td><td>학 위</td><td colspan="2">기 간</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자 격 증</td><td>종목 및 등급</td><td>자격증 번호</td><td>시 행 처</td><td colspan="2">취득일자</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경 력
※신청과목
관련경력</td><td rowspan="2">기관명</td><td rowspan="2">강좌명</td><td rowspan="2">강의분야</td><td colspan="2">활동기간</td></tr>
<tr><td>시작일</td><td>종료일</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거창군 학력인정 문해교육 강사모집 및 활용을 위함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제출일부터 관련 문서 보존연한이 다하는 시점까지 이용함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등
▷ 기재된 정보는 업무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활용하지 않음

위 사항에 동의함 □

상기 본인은 2023「성인문해문해교육 프로그램」강사 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23년 월 일

지원자 (인)

거창군수 귀하

【서식2】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지원분야 :

※ 주요 작성 내용

- 휴먼명조12p, 줄간격 160%
- 문해교육을 하게 된 계기
- 나에게 문해교육이란? (문해교육에 대한 열정, 봉사심, 사명감등)
- 문해교사로서의 각오, 다짐(교실운영, 행정조직과의 관계등)

2023년　　월　　일

작 성 자 :

【서식3】

교수 · 학습 과정안

일 시	2023년 2월 20일(월)	시 간	10:00-12:00
단원/단원명		쪽	~

단계	중심활동 (학습요소)	교수 .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수 활동	학습 활동		
도입	동기유발 목표확인				
전개	학습 활동				
정리	정리확인 차시예고				
비고	평가 과제 기타				
판서 계획					

【참고】 교수 · 학습과정안 작성 방법

○ 아래 표를 참조하여 1개의 단원을 결정하여 작성 *임의 변경 불가
○ 초등 : 한 단원 수업시수를 3차시로 가정하여, 1차시만 작성 *1차시는 2시간
○ 중학 : 단원의 일부를 2시간에 맞게 작성
○ 면접시 시연 예정이므로 감안하여 작성

【찾아가는 교실 및 초등 학력인정 과정】

단계	교재명	단원명	비 고
초등1	소망의 나무1	2. 하늘, 땅, 사람	
	소망의 나무4	4. 나비가 날아 갑니다	
초등2	배움의 나무5	2. 낱말의 짜임	
	배움의 나무7	22. 비교할 수 있어요	
초등3	지혜의 나무9	7. 이야기 속 생각	
	지혜의 나무11	4. 우리글 바르게 쓰기	

【중학 학력인정 과정】

과목	단계	단원명	비고
국어	1단계	4. 소중한 우리 한글	
	2단계	7. 시대속의 문학	
	3단계	2. 경험을 나누는 글	
영어	1단계	1. 우리 인사해요	
	2단계	8.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3단계	1. 정말 예쁘군요!	
수학	1단계	1. 쇼핑, 외식과 수학	
	2단계	2. 쇼핑, 외식과 수학	
	3단계	2. 쇼핑, 외식과 수학	
사회	1단계	1. 인간과 환경	
	2단계	2. 문화와 생활	
	3단계	4. 역사	
과학	1단계	1. 생면과 건강	
	2단계	2. 지구와 환경	
	3단계	3. 힘과 에너지	

【참고】 학력인정 과정 수업시수

▢ 초등학력인정 수업시수

구분 \ 단계			초등 1단계	초등 2단계	초등 3단계
교과영역	국어		172	154	115
	사회				20
	수학		28	28	23
	과학				13
	영어			8	14
	기타 교과	음악/미술		10	15
		한문			
	소계		200	200	200
창의적 체험활동			40	40	40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240	240	240

1) 1시간의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각 단계는 연간 40주를 기준으로 하여 주당 6시간, 총 240시간의 수업을 실시한다.
3) 수업 운영은 주당 최소 3회, 회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1단계 주당 운영 횟수는 2회 이상으로 한다.
4) 각 단계별 편성 시수는 각 단계를 이수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업 시수이다.

▢ 중학학력인정 수업시수

구분 \ 단계			중학 1단계	중학 2단계	중학 3단계
교과영역	필수교과	국어	100	100	100
		사회	70	70	70
		수학	60	60	60
		과학	70	70	70
		영어	60	60	60
	선택교과		50	50	50
	소계		410	410	410
창의적 체험활동			40	40	40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450	450	450

1) 1시간의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각 단계는 연간 40주를 기준으로 하여 주당 10시간 이상, 총 450시간의 수업을 실시한다.
3) 수업 운영은 주당 최소 3회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4) 각 단계별 편성 시수는 각 단계를 이수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업 시수이다.

거창군 공고 제2023-159호

뭐든知 가능한 원데이클래스 강사 모집 공고

거창군은 2023년 뭐든知 가능한 원데이클래스 운영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거 창 군 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담당부서	모집분야	모집인원	활동내용
인구교육과	원데이클래스 운영 강사	15명 정도	원데이클래스 수업 운영

2. 활동사항

구 분	토요 원데이클래스	찾아가는 원데이클래스
활동분야	공예, 미술, 음악, 문화, 요리, IT분야 등 **2시간 수업 가능한 강의**	
활동기간	2023. 4월 ~ 10월 / 28주간	2023. 7월 ~ 8월 / 6주간
장 소	하천환경교육센터	11개 면
운영방법	매주 토요일 2회씩 총 56회 (오전 10시, 오후 14시)	각 면 4회씩 총 44회 (오후 14시)
강 사 료	120,000(4급 2시간 기준)	
기타사항	-강사 워크숍 필수 참석(2023. 3. 16.예정) -토요원데이클래스 & 찾아가는 원데이클래스 모두 가능자 우대	

3.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창군 거주자

○ 활동분야와 관련하여 전공·유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재능을 갖추고 있는 군민(자격증 미소지자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1. 30.(월) ~ 2. 1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청소년수련관 2층)

○ 제출서류 : 신청서, 이력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선발방법 및 일정

○ 선발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면담심사 실시)

○ 결과발표 : 2023. 3. 9.(금)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게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담당(☎940-8825)으로 문의

【서식1】

2023 뭐든知 가능한 원데이클래스 운영 강사 신청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 colspan="2">미기재</td><td></td><td></td><td></td></tr>
<tr><td>이 름</td><td></td><td>□남 / □여</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휴대전화</td><td colspan="2"></td><td>이 메 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활동범위
(중복 선택 가능)</td><td colspan="3">토요 원데이클래스</td><td colspan="2">찾아가는 원데이클래스(14시-16시)</td></tr>
<tr><td colspan="2">오전(10시-12시)</td><td>오후(14시-16시)</td><td>월</td><td>화</td><td>수</td><td>목</td><td>금</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14">교육내용
(수업가능한
과정 모두
기입)</td><td rowspan="5">1</td><td>과 정 명</td><td>리스만들기</td><td colspan="2">관련사진</td></tr>
<tr><td>소요시간</td><td>1시간 30분</td><td colspan="2" rowspan="4"></td></tr>
<tr><td>재 료 비</td><td>15,000원</td></tr>
<tr><td>준 비 물</td><td>개인가위</td></tr>
<tr><td>과정소개</td><td>생화를 활용한
나만의 원형 리스만들기</td></tr>
<tr><td rowspan="5">2</td><td>과 정 명</td><td></td><td colspan="2">관련사진</td></tr>
<tr><td>소요시간</td><td></td><td colspan="2" rowspan="4"></td></tr>
<tr><td>재 료 비</td><td></td></tr>
<tr><td>준 비 물</td><td></td></tr>
<tr><td>과정소개</td><td></td></tr>
<tr><td rowspan="5">3</td><td>과 정 명</td><td></td><td colspan="2">관련사진</td></tr>
<tr><td>소요시간</td><td></td><td colspan="2" rowspan="4"></td></tr>
<tr><td>재 료 비</td><td></td></tr>
<tr><td>준 비 물</td><td></td></tr>
<tr><td>과정소개</td><td></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이 거창군 원데이클래스 강사로 신청 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td></tr>
</table>

【서식2】

이 력 서

<table>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d>성 별</td><td></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2"></td><td>이 메 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3">학 력</td><td>기 간</td><td colspan="2">학교명</td><td colspan="4">전공(학위)</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4"></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주 요
경 력</td><td>기 간</td><td colspan="2">직 장 명</td><td>직 위</td><td colspan="3">담 당 업 무</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자 격
면 허</td><td>취득일자</td><td colspan="2">자격증명</td><td colspan="4">발급기관</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4"></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4"></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8">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 : (인)</td></tr>
</table>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뭐든지 가능한 원데이클래스 운영 강사 선발 심사(서류전형)에 필요한 인적사항, 자격・경력확인 조회를 목적으로 함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최종학력, 전화번호, 이메일, 주요경력 등

ㅇ 자격, 경력, 최종학력 이외의 학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생교육 강사 선발 관련 문서 보존 기한 완료시 폐기처분함

라. 동의의 거부

응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항목 거부 시 응시에 제한이 있으며, 선택항목 중 자격・경력의 동의 거부 시 가점 미부여 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제공포함)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 내용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귀 기관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사항 등]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거창군 공고 제2023-166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활동을 정함(안 제3조)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신청 및 결정을 정함(안 제4조)
○ 바우처의 사용지역을 정함(안 제5조)
○ 가맹점의 등록을 정함(안 제6조)
○ 점검, 이월 및 사용기한, 대금의 지급을 정함(안 제7조~제9조)
○ 바우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10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3. 1. 30. ~ 2023. 2. 20.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인구교육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0)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청소년수련관

라. 전화 055-940-8702, 팩스 055-940-870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청소년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리고 기본적인 생활 여건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거창군수가 제3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활동) ① 거창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문화·체육 활동
2.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3. 이미용 등 일상유지를 위한 필수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으려는 청소년,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군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인지를 확인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점검)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의 점검 ·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해당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9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

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0조(바우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3-167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지행규칙

2. 제정이유

○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법, 가맹점 등록 시설 등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지원 신청·결정, 지원 시기 및 방법(안 제4조~제6조)

○ 가맹점 등록대상, 등록 및 관리,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를 정함(안 제7조~제9조)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3. 1. 30. ~ 2023. 2. 20.

6.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인구교육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0)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청소년수련관

라. 전화 055-940-8702, 팩스 055-940-870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대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바우처 지원 나이는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지원 금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100,000원
2.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00,000원

제4조(지원 신청)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제5조(지원 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보낸다.

②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신청한 해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매년 지원한다.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대상)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서실

나. 직업기술분야 학원

다. 예능분야(음악·미술·무용) 학원

2.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교복점, 서점

3.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자에 대해 가맹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 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지원 대상자 (청소년)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관 계	□ 본인 □ 법정대리인: 부[ ] 모[ ] 그 외[ ]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동의란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비 고		수수료 없 음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정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3호, 제4호에 따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목적: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바우처 지원 동의서

위 본인은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금액이 지급될 경우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재)발급 위임장

지원대상자 (청소년)	성명:	생년월일	□□□□□□ - □××××××
위임자 (보호자 또는 시설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 신청서

1. 가맹점 정보

상호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 - □××××××
주 소		이메일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2. 계좌정보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3. 카드단말기 정보

카드단말기 부가가치 통신망(VAN)사명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 매장 내 카드단말기 부가가치통신망(VAN)사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체크)

☐ **수집항목(필수항목)**	• 상호(업체)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카드단말기 부가가치 통신망(VAN)사명,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등
☐ **수집 · 이용목적**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정보제공, 신청 홍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개인(업체)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서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가맹점 선발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체 항목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인적사항,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계좌정보, 카드단말기 VAN사 정보 등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 가맹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해주십시오.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거창 - 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증

○ **상호명:** ○ **업종:**

○ **소재지:**

○ **성명:** ○ **생년월일:** . . .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업체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 가맹점 사업주 준수사항 -

1. 거창군수는 가맹점이 다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가맹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바우처카드를 사업장에 보관하는 행위
   나. 바우처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라. 실제 거래금액 이상의 바우처카드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3. 거창군수는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거창 - 호)

1. 가맹점 정보

상호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 - □××××××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2. 신청사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변경사유: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별지 제6호서식]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거창 - 호)

1. 가맹점 정보

상호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 - □××××××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2. 해지사유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원본)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3-174호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드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을 교육기관으로 한정하던 것을 드론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나.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드론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교육을 받는 군민에게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대상 확대(안 제5조)

1) 드론 교육기관 ⇒ 드론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

나.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교육경비 지원 신설(안 제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3. 1. 31. ~ 2 2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2. 20.(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전략담당관실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층 전략담당관실

2) 전화 055)940-3694, 팩스 055)940-3679, 이메일 jy9153@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전략담당관실 전략담당[☎(055)940-36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교육기관”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기관”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드론 교육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교육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드론 교육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항공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항공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항공사업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항공안전법」제2조 및「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거창군 공고 제2023- 184호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 생활 속 정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정원 개방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 시민정원사 육성 및 활용, 정원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

3.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을 정함(안 제4조)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정원문화 관련 교육,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등

2)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장려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다. 정원산업의 육성 지원을 정함(안 제5조)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보급·관리, 기술지도 및 교육, 정보교류 및 협력,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등

2) 정원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라. 시민정원사 육성 등을 정함(안 제6조)

1) 시민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또는 위탁 운영

2) 시민정원사 교육에 드는 경비 지원

마. 정원 전문가와 시민정원사의 활용 지원을 정함(안 제7조)

4. 예고기간 : 2023. 2. 1.(수) ~ 2. 20.(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2. 20.(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산림과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산림과 공원녹지담당)

2) 전화 055-940-3482, 팩스 055-940-3459, 이메일 pressp@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과과 공원녹지담당 【☎(055)940-34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군민이 정원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민정원사 육성 등)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한 지식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정원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정원 전문가와 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정원 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장려 할 수 있다.

② 군에서 주최하는 정원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 전문가 또는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관련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 [법률 제18025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18조의6(정원의 운영·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제18조의8(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3.] [종전 제18조의8은 제18조의13으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17(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7은 제18조의21로 이동 <2021. 4. 13.>]